제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엄 재 식
제출일자	2020. 9. 25.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허가체계 개편(안 제35조)

1)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를 기존 사업허가 및 지정에서 건설허가·운영허가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 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 요건을 신설

나. 지정 제도 폐지(안 제35조제2항 삭제)

1) 건설·운영허가 체계 개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지정 제도를 폐지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처분 협의 조항 삭제(안 제35조제4항 삭제)

1) 사용후핵연료처리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원안위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9~10월), 규제심사(9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12월) 등

【붙 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붙 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제35조제4항”을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으로,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을 “받”으로,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을 “받은 시설”로 한다.

15. “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가공(변환 포함)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및 핵물질사용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을 “(건설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를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함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건설허가 기준 등) ①제3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제37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을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허가를”로,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로, “설치 및 운영”을 “건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할”을 “기준에 미달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또는 지정신청서”를 “신청서”로, “제44조”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94조, 제96조를 위반한 때
8. 제3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그 건설 공사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는”을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로,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을 “기록하여 이를 공사장”으로,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준용)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및 사업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

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로 본다.

제4장제2절(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39조의3(운영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와 함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안전관리규정,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핵연료주기 시설의 해체계획서(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6”로 본다.

제39조의4(운영허가 기준 등) ①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39조의5(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가 부족할 때
2.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 규정에 위반될 때

제39조의6(운영허가의 취소)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때
3. 제3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9조의4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39조의5제2항·제41조·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40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7(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핵연료주기사업자가”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제35조제3항”을 “제39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36조제2항”을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제3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3조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의 사업 승인,”을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45조 앞에 “제2절 핵물질사용”을 삭제한다.

제45조 앞에 “제3절 핵물질의 사용”을 삽입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핵연료주기사업자”를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또는 지정받”을 “받”으로 한다.

제51조 후단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또는 지정받”을 “받”으로 한다.

제62조 후단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

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로 한다.

제83조 후단 중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를 ““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시설운영자””로 한다.

제92조의2 중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를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자”로 한다.

제94조제1호 중 “허가 또는 지정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48조・제57조”를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39조의6・제48조・제57조”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을 “허가가 취소된”으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를 “허가가 취소되었거”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 또는 지정이”를 “허가가”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허가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 또는 지정”을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지정받”을 “받”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48조・제57조제1항・제6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39조의6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호 중 “제35조제3항・제45조제2항・제53조제3항”을 “제39조의3제2항・제45조제2항・제5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7조・

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를 “・제37조・제39조의5・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39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으로, “인가・허가 및 지정”을 “인가 및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를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로,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6조제3호”를 “제3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9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39조의5제1항,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를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로, “단서 및 제2항”을 “단서, 제3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허가・지정・승인・등록”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허가・지정・승인・면허・등록・검사”를 “허가・승인・면허・등록・검사”로 한다.

제116조제1호 중 “전단 및 제2항”을 “전단・제39조의3제1항”으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59조의2제3항・제66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39조의6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59조의2제3항・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1호 중 “후단 및 제2항”을 “후단・제3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를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을 “・제37조제

1항・제39조의5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을 “・제37조제2항・제39조의5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를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또는 지정 조건”을 “조건”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를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로, “단서 및 제2항 단서・제42조제1항”을 “단서・제39조의3제1항 단서・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를 “・제39조・제39조의7・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을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그 허가・지정 및 이와 관련된 행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을 받은 자 또는 이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변경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지정을 받은 자의 변경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허가 및 지정 서류에 대한 변경 허가 및 신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호마목 및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바.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변환・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말한다.	15. “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가공(변환 포함)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24. “해체”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 ------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받---------- 받은 시설----------
24의2.・25. (생 략)	24의2.・25. (현행과 같음)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및 핵물질사용 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건설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 ----------. <삭 제>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지정 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	

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각각 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와 함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삭 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⑤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 ---------

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8조”로 본다.	----------.
제36조(허가 등 기준) ①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건설허가 기준 등) ①제35조제1항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구조·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변	5. 제35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 제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 삭 제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2. 삭 제
제37조(검사) ①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검사)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허가를 -----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건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 ------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
1. 제3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지	1. ---------- 기준에 미

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할 때	달될 ---------- ---------- ----
2.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2. ---------- 신청서---------- ---------- --- 제39조의2---------- ---------- -------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는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받은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

속하여 그 사업을 중단한 때	가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3. 제3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36조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37조제2항·제41조·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94조, 제96조를 위반한 때
7. 제40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3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그 건설 공사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 기록하여 이를 공사장 ---------- 갖추어 두어야 ----------.
<신 설>	제39조의2(준용)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및 사업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로 본다.
<신 설>	제2절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신 설>	제39조의3(운영허가) ①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와 함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 안전관리규정,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해체계획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9조의6”로 본다.		
<신 설>	제39조의4(운영허가 기준 등) ①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신 설>	제39조의5(검사)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39조의4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가 부족할 때 2.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 규정에 위반될 때
<신 설>	제39조의6(운영허가의 취소) 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 받은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운영을 중단한 때 3. 제3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9조의4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제39조의5제2항·제41조·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40조제1항·제2항, 제70조, 제89조제5항, 제94조, 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때
	9. 제99조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9조의7(기록과 비치)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그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 ---------- ---------- ----------.
②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 제39조의3제2항---------- ----------.
③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제39조의4제2항----------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이나 이전방법의 지	제41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 ------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 ----------

정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주기시설을 해체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①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사업자의 사업 승인,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사업----------.

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제2절 핵물질사용	<삭 제>
<신 설>	제3절 핵물질의 사용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받----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준용)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 승인·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	제51조(준용) ----------.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핵연료주기시

기사업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설설치자”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받---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2조(준용)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	제62조(준용) ----------. ------ “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

연료주기사업자”는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제69조(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에게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로 본다.	제69조(준용) ----------. ----- “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제71조(운반신고)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연료물질사용자·핵원료물질사용자·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업무대행자 ------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	제83조(준용) ---------- ---------- ----------. ------ “발전용원자로설치자”·“핵연료주기시설설치자” 또는 “핵연료시설운영자”---------- --------.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 ----------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자---------- ---------- ---------- ---------- ---------- ---.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제약속에 따라 국가가 핵물질을 양도·양수하거나 국가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 ---------- ---------- ---------- ---. ---------- ----------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범위에서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 ---------- -- 허가를 ---------- ---------- ---------- ----------
2.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48조·제57조 및 제6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용이 금지된 때에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하거나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제17조·제24조·제32조·제38조·제39조의6·제48조·제57조 -- 허가가 취소된 ----- ---------- 허가가 취소되었거--------- ---------- ---------- ----------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사용금지를 포함한다)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제95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 허가가 ---------- ---------- ---------- ----------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와 그 밖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9조(허가 조건) ① --------- 허가----------.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 받----------.
제101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청문) ----------.
1.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48조·제57조제1항·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1.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39조의6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66조제1항 ---------

2.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5조제3항·제45조제2항·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1. ---------- - 제39조의3제2항·제45조제2항·제53조제3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	3. ---------- ---·제37조·제39조의5·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 ----------

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
1.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1. ---------- 제39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인가 및 허가----------
2. 제10조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 ---------- 제42조제1항 ----------
3. 제1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4호(제30조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3호, 제46조제3호,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59조제1항, 제64조제2호, 제68조제1항, 제72조 및 제79조제2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	3. ---------- 제36조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39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4.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제6항(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4. ----------

한다),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본문, 제65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점검	---------- 제39조의5제1항,제47조제1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0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3조	8. ------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 ---------- 단서, 제39조의3제1항 ----------

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8조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 허가·승인·등록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지정·승인·면허·등록·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이	제112조(수수료) ---------- 허가·승인·면허·등록·검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116조(벌칙) ---------- ---------- ---------- ---------- ----------.
1. 제10조제1항 전단·제20조제1항 전단·제30조제1항 전단·제30조의2제1항 전단·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제45조제1항 전단·제53조제1항 전단·제54조제1항·제63조제1항 전단 또는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소지·사업 등 각 해당 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1. ---------- ---------- ---------- --- 전단·제39조의3제1항 -- ----------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59조의2제3항·제66조제1항 또는 제81조	3.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제32조·제38조제1항·제39조의6제1항·제48조·제57조제1항·제59조의2제3항·제6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한 자	제1항 ---------- ---------- ----------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 ---------- ---------- ---------- -----.
1. 제10조제1항 후단·제20조제1항 후단·제30조제1항 후단·제30조의2제1항 후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제45조제1항 후단·제53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 ---------- ---------- --- 후단·제39조의3제1항 -- ---------- ---------- ---------- ---------- ---------- ---------- ----------
2. 제10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제1항 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1항 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2조제1항 전단·제60	2. ----------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 ---------- ---------- ---------- ----------

조제1항 전단·제76조제1항 전단 또는 제111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1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3. ----------·제37조제1항·제39조의5제1항·제47조제1항·제56조제1항·제65조제1항·제75조제1항·제77조제1항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항(제34조	1. ----------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7항(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제2항·제39조의5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9조·제34조·제39조의2·제44조·제51조 ----------
4.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4. ---------- 조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9조(과태료) ① ----------.
1. 제10조제1항 단서·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	1. ----------제29조·제34조·제3

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조제3항(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1항 단서·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제1항 단서·제30조의2제1항 단서·제31조제1항·제33조·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42조제1항 단서·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및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5조제1항 단서·제52조제1항·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제54조제2항·제60조제1항 단서·제63조제1항 단서·제71조·제76조제1항 단서·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9조의2·제44조·제51조 ---------- ---------- ---------- ---------- ---------- ---------- ---------- ---------- ---------- ---------- ---------- 단서·제39조의3제1항 단서·제42조제1항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 ---------- ---------- ---·제39조·제39조의7·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이경용 과 장	(02) 397 - 7261
송영동 서기관	(02) 397 - 7264